

2020년 식품 품질·위생 단기역량제고 지원업체 모집공고

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는 중소식품기업의 품질, 위생·안전 분야 단기 역량제고를 위한 컨설팅 지원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.

□ 사업개요

○ 지원대상 : 국산원료를 사용하는 중소식품기업

- * 국산원료 범위 : 「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3조와 「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」 제4조 표시기준에 따른 원재료명 표시란에 “국산” 표기 된 원료를 1개 이상 사용한 경우
- *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「식품산업진흥법」 제2조에 따른 식품산업을 영위하는 식품기업(도소매업 제외 단, OEM 개발 식품업체 포함)
- * 접수마감 후 모집 미달 시 지원대상 자격 완화 가능

○ 지원내용 : 전문위원 현장지도 5~8회

지원사업	지원구분	지원한도	자부담금	비고
식품 품질·위생 단기역량제고	일반기업	1,400천원	100천원	현장지도 5회(1회 4시간)
	우대기업*	2,300천원		현장지도 5회~8회(1회 4시간)

- * 우대기업 : 소규모기업(최근년도 매출 1억원 미만 또는 5인이하), 사회적경제기업 [사회적기업, 협동조합, 마을기업 등], 장애인기업, 농공상용합형기업, 창업기업(7년 이내 : 우대기업적용 또는 컨설팅 중복지원)
- * 우선 접수 전문분야, 사업규모, 수행계획서 등을 검토 후 추가 현장지도 적용

○ 지원분야 : 7개 분야 중 1개 분야 선택 지원

구분	지원분야	세부내용
위생 안전	HACCP 인증준비	◦ HACCP 인증시스템 구축을 위한 준비단계
	ISO 22000 / FSSC 22000 인증준비	◦ ISO 22000 / FSSC 22000 인증시스템 구축을 위한 준비단계
	GMP 지정준비	◦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구축을 위한 준비단계
	식품안전시스템구축	◦ 식품안전 개념설계 및 메뉴얼구축
품질 개선	공정품질개선	◦ 품질공정개선을 통한 경쟁력 확보
	상품품질개선	◦ 상품기획 및 개발을 통한 차별력 강화
	디자인품질개선	◦ 브랜드 및 포장디자인 개선

- 지원규모 : 90개소(위생·안전 분야 60, 품질개선 분야 30)
 - * 모집 결과에 따라 지원분야 별 지원업체 수 조정 가능

○ 지원절차

지원사업 추진절차	진행방식
신청접수(온라인) → 선정 → 자부담금 납입 → 전문위원 매칭 → 인지도조사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→ 사업수행(5~8회) → 수행완료 → 완료평가 및 만족도조사 → 수입료 정산	foodbiz.or.kr 온라인 접수 및 수행관리

□ 신청방법

- 접수기간 : 공고일로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
 - * 모집기간 내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(우선접수 후 진행)
- 제출서류 : 지원 신청서(온라인 및 aT양식)
 - * 구비서류 : 사업자등록증, 최근 2년간 재무제표(또는 부가가치세표준증명), 원산지 표기된 표시사항 견본 등
- 접수처 : aT식품기업지원관리시스템(www.foodbiz.or.kr) 온라인 접수
 - ① (회원가입) 로그인 시 aT 홈페이지 통합회원 연결(개인/법인사업자 가입)
 - ② (기존회원) foodbiz 로그인 → 마이페이지 → 회원가입정보변경 → 식품기업 부가정보 입력(회원종류 : 식품기업) 클릭 정보입력
 - ③ 모집공고 → “2020년 식품 품질·위생 단기역량제고 지원업체 모집공고” 선택 → 온라인 신청 → 작성 제출
- 문의처 : aT 식품기업지원센터 식품기업컨설팅부 ☎ 02-6300-1734, 1733

□ 전문위원 매칭, 지원제외 대상 및 유의사항

- 전문위원 매칭 : 수진업체에서 전문위원 최종 선정
 - 직무역량기술서 정보 제공 방식으로 수진업체에 전문위원 선택권 제공
 - 수진업체 미 선택 시 분야별 전문위원 풀에서 공사가 직접 매칭
 - 과거 동일분야 코칭 경력이 있는 업체와 전문위원 재매칭 불가

○ 지원제외 대상

- 공정거래위원회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(대기업 집단)
-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자로 제재대상 기업
- 타 지원기관의 유사·중복사업에 선정되어 신청하거나, 관련 용역계약을 기체결한 상태에서 신청하거나 활용하는 경우
- 신청기업 또는 신청기업 대표자가 신용거래 불량, 부실위험 여부 등 아래 항목에 해당할 경우 신청, 수행 중, 완료 이후라도 제외 가능
 - * 기업부도, 화의, 법정관리중인 기업
 - *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
 - *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, 휴·폐업 중인 기업
 - *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
- 신청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또는 수행기간 중 임의 사업 중단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향후 3년간 본 사업 참여 제외

○ 지원 시 유의사항

-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,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, 신청기간 내 보완 서류 미제출 시 신청 포기로 간주
- 창업지원 업체 중 1년 이내 업체의 경우 매출 증빙자료 제출 제외
- 신청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또는 컨설팅 수행 기간 중 임의로 중단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본 사업 참여를 제한함